

뉴저지한인목사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‘뉴저지한인목사회’ (The Korean-American Clergy Association of New Jersey, KACANJ)라 칭한다. (이하 ‘본회’라 칭한다.)

제 2 조 (위치) 본 회는 미합중국 뉴저지 (New Jersey, USA) 안에 둔다.

제 3 조 (목적) 본 회는 뉴저지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한인 목사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의 연구를 도모함으로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협동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(자격)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뉴저지 내의 한인교회 소속된 목사와 특별기관,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거주자로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소속 기관 발행 목사안수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5 조 (의무와 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과 회칙 준수와 규정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, 최근 3 년의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
제 6 조 (정지) 본 회의 의무 불이행 및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 및 조직

제 7 조 (임원과 임무) 본 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회장 1 인: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 1 인: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
- 총무 1 인: 회장을 도와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한다.
- 협동 총무 약간 명: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
- 서기 1 인: 본 회의 각종 회의록 보관과 공문 수발, 기타 서류 일체를 담당한다.
- 부서기 1 인: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
- 회계 1 인: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부회계 1 인: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

제 8 조 (위원회) 본 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.

- 목회분과: 목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- 교육분과: 교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- 선교분과: 선교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- 음악분과: 음악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- 체육분과: 체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- 경조분과: 애경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
7. 원로분과: 원로 목사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.

제 9 조 (감사) 본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2 인을 선출하고, 본 회의 재정 감사를 담당한다.

제 4 장 선거 및 임기

제 10 조 (선거)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회장은 현 부회장을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 단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, 공천위원회에서 다른 회장 후보를 낸다.
2.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자를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3. 공천위원회는 만 70 세 이전의 본 회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.
4. 회장과 부회장 외의 모든 임원들은 회장단에서 선정한다.
5. 각 분과 위원회는 임원단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임기) 본 회의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,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의

제 12 조 (회의)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정기 총회: 정기 총회는 매년 9 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보고 및 계획, 임원 선출, 회칙 개정,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 회의 소집은 15 일 전에 공고한다.
2. 임시 총회: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.
3. 임원회: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4. 실행위원회: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각 분과 위원장의 모임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13 조 (성원) 본 회의 회의 성원은 당일 출석자로 한다.

제 6 장 재정

제 14 조 (수입 및 지출)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, 현금, 특별찬조, 기타 협찬금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집행한다.

제 15 조 (회계 연도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제 7 장 산하 기구

제 16 조 (뉴저지 남성목사 합창단)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.

제 17 조 (뉴저지 목사 축구 선교단)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.

제 18 조 (여성 목사 합창단)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.

제 19 조 (산하 기구 행정 조직) 본 회 산하 기구로 행정 조직은 단장과 총무를 두되,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. 기타 임원과 활동은 내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산하 기구 가입조건) 각 산하 단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목사회 회원이어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 (회칙 개정)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제 2 조 (세칙) 본 회의 회칙 보완을 위해 총회 인준의 세칙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 3 조 (발효) 본 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.

*** 이상 전문 7 장 20 조, 부칙 3 조***

주후 2010년 05월 10일 창립 제정

주후 2010년 07월 13일 개정

주후 2015년 08년 03일 개정

주후 2018년 07월 02일 개정

주후 2020년 09월 01일 개정

주후 2021년 09월 27일 개정